「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25. . .
제 출 자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비만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 수정

• 당 초: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변 경: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개정안과 같음)
1. “비만”이란 지방조직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며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안과 같음)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	(개정안과 같음)
제6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비친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2. 연령·집단별 맞춤 지원 방안 3. 홍보·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과 같음)